

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 공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6(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)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1(가맹점의 등록 말소)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말소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6. 10. 26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붙임 :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 대상 목록 1부. 끝.